





발행처 _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044)204-5797 인 쇄 _ 닥터조이 02)2771-1041

※ 책자의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

$oxed{I}_{ullet}$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
▮ •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
Ⅲ •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
₩ . 피해주민 간접지원(원스톱서비스)
$oldsymbol{V}_ullet$ 풍수해보험료 지원
Ⅵ •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
Ⅷ。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
Ⅷ。 기타 지원 사항
Ⅸ .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Ⅰ.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

▶ 근거법령

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.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▼ 지원 대상·금액

- ① 세대주·세대원 중 사망·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
 - 사망·실종 : 세대주 1,000만원, 세대원 500만원
 - 부상 : 세대주 500만원, 세대원 250만원
- ② 주택피해(전파 유실, 반파, 침수피해)를 입은 경우
 - 주택전파 유실 900만원, 반파 450만원, 침수 100만원
 - ※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(전파 480천원, 반파 240천원, 침수 56천원/1인당)
 - ※ 산출기초(8.000원/1인/1일, 전파 60일, 반파 30일, 침수 7일)
-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 - ※ 주생계수단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 - ※ 총 소유량의 50%이상 피해를 입은 농 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

▼ 신청방법

• 「자연재난피해신고서」를 작성 읍·면·동사무소 10일 이내에 관할 해당부서에 제출 ※ 인명피해는 주소지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

▶ 지원절차



▼ 피해신고요령

신고 기간과 대상은?

-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
- 주택, 축사, 비닐하우스, 어선, 인삼재배시설, 수산증양식 시설, 농경지, 가축, 어패류, 농작물
- 농 · 임 · 어 · 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※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



- HOII-

- 읍면동과 이 · 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
-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
-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 등 기입
-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
- ※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
-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(www.safekorea.go.kr)



제출 장소 및 접수는?

신고서 작성은 어떻게?

• 피해소재지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※ 이장.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

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?

-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이 ·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
-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





Ⅱ.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

응급구호세트(남/여) / 취사구호세트

▶ 응급구호세트(남): 1인 기준

구분	담요	칫 솔	세면비누	수 건	화장지	베개
규 격	200cm×150cm,1.3kg 200cm×150cm,0.7kg	일반용	100g	80cm×40cm	미용티슈	PVC 38cm×28cm×10cm
수량	2장	1개	1개	2장	1개	1개

구분	면장갑	간소복	면도기	속내의	양말	매트	슬리퍼	귀마개	안대
규 격	반코팅	면폴리 혼 방	1회용	면	면	140cm×200cm 우레탄, 방수	대, 중, 소	우레탄	쿠션
수 량	1켤레	1벌	1개	2벌	2켤레	1개	1족	1개	1개
개별구	호물품	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.0ℓ) 1병							

▶ 응급구호세트(여): 1인 기준

구분	담요	칫 솔	세면비누	수 건	화장지	베개
규 격	200cm×150cm,1.3kg 200cm×150cm,0.7kg	일반용	100g	80cm×40cm	미용티슈	PVC 38cm×28cm×10cm
수 량	2장	1개	1개	2장	1개	1개

구분	면장갑	간소복	속내의	양 말	매트	슬리퍼	귀마개	안대
규 격	반코팅	면폴리 혼 방	면	면	140cm×200cm 우레탄, 방수	대, 중, 소	우레탄	쿠션
수량	1켤레	1벌	2벌	2켤레	1개	1족	1개	1개
개별구	호물품	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.01) 1병, 생리대 1조						

[※] 의류(간소복·속내의) 크기에 따라 대(남105, 여100), 중(남100, 여95), 소(남95, 여90)로 구분, 대·중·소 구성 비율은 3:5:2로 함

▶ 취사구호세트: 1세대 4명 기준

구분	가스렌지	코 펠	수 저	세탁비누	세탁세제	주방세제	고무장갑	수세미	다용도가방
규 격	휴대용	4인용	sts	230g	1kg	500g	고급형	부직포	PE타포린
수 량	1개	1세트	4벌	1개	1개	1통	1켤레	2개	1개
개별구	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(10kg) 1포, 부식류(고추장, 간장, 된장, 김치 등 기타 부식류), 부탄가스 4개, 살균 · 표백제 1개							 균 · 표백제 1개	

[※] 개별구호물품은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, 분유세트(분유·젖병), 기저귀, 모기약, 양수기(가뭄대비), 쿨 스카프(폭염대비), 전기매트(한파대비), 응급의약품 세트(반창고 등 10종) 등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

▶ 응급구호세트(남)



▶ 응급구호세트(여)



▼ 취사구호세트



04 정부자원 종합 안내서 국민안전처 05

Ⅲ.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<u>의연금 지원</u>

▶ 근거법령

• 「재해구호법」 제26조. 「의연금품 관리・운용 규정」

▼ 지원 대상·금액

구 분	의연금(만원)	비교
○ 사망·실종자(1인)		
• 세대주	최대 1,000	
• 세대원	최대 500	
○ 부 상 자(1인)		
• 세대주	최대 500	
• 세대원	최대 250	
○ 생계지원	최대 100	세대당 지급
○ 주택파손(동)		
• 전파·유실	최대 500	세대당 지급
· 반 파	최대 250	세대당 지급
• 침 수	최대 100	세대당 지급

[※] 배분위원회 심의 · 의결을 거쳐 의연금 지원 금액 결정

▼ 지원절차

• 피해주민 신고 후 지자체에서 의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면 구호협회(배분위원회)에서 지원금액·지원 범위 등을 심의·의결한 후 이재민 개인별 계좌에 입금



※ 지원대상 재해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

Ⅳ. 피해주민 간접지원 (원스톱서비스)

▶ 간접지원이란?

• 자연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요금 감면, 세제 혜택 등을 지원

▶ 원스톱 서비스란?

• 한번의 피해신고만으로 해당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간접지원 서비스를 받도록하는 서비스

▶ 근거법령

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,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4조 및 제12조

▼ 지원개요

• 지원대상: 「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 가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

• **지원내용** : 간접지원 13개 분야

① 건강보험료 경감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③ 통신요금 감면

④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⑤ 국세 납세유예 ⑥ 전기요금 감면 ⑦ 복구자금 융자

® 도시가스요금 감면 ◎ 지역난방요금 감면 ◎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⑪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⑫ 상하수도요금 감면 ⑬ 농기계수리 지원

▼ 지원절차



1 건강보험료 경감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▶ 근거법령

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,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91조, 시행령 제60조

▼ 대상·범위

건강보험료 경감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
-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 경감(하나만 발생시 3개월)
 - ※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~50% 경감

[건강보험료 경감률]

구분	적용 기준			
TE	1등급	2등급	3등급	
재난등급 (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)	1~5	6~55	56~100	
경감률	50%	40~49%	30~39%	

- ※ 건강보험료 경감은 월보험료 최대 50% 초과할 수 없음
- ※ 소상공인은 재난등급에 상응하는 피해금액에 따라 경감률 적용

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의거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
 - ※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

▼ 지원절차



③ 전기요금 감면④ 통신요금 감면

▶ 근거법령

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9조

▼ 대상·범위

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
 - 멸실된 건축물(주택 등): 1개월분 전기요금 면제
 - 침수 및 파손 건축물: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% 감면(주택용은 100% 감면)
 - 전기요금 납기연장 : 멸실, 침수 및 피손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
 -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 요금 감면(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)
 - 건축물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면제

통신료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유선통신요금 감면
- 1~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.500원
 - ※ 감면 내용(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)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
▼ 지원절차



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

▶ 근거법령

- 「국세기본법」 제6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85조의2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, 제80조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, 제92조

▼ 대상·범위

-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
- 재난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

▼ 지원내용

국세 납세유예

- (신고·기한연장) 신고·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·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
- (징수유예)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

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

- (감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감면
- (납기유예) 납세자의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도난,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위독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(6개월에서 최대 1년)
- (면제)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

▼ 지원절차



7 재해 복구자금 융자

▶ 근거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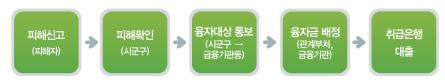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
-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
▶ 융자 대상 및 조건

소관부처	피해시설	취급은행	상환기간	이율(고정금리)
농식품부	농경지, 농작물등	농협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해양수산부	어선, 수산생물 등	수협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산림청	산림작물, 시설 등	산림조합	5년 거치 10년 상환	연리 1.5%
국토교통부	주택 (전파,유실,반파)	농협, 우리, 국민, 기업, 신한, 하나	3년 거치 17년 상환	연리 2.5% (변동금리)
중소기업청	소상공인	일반은행	2년 거치 3년 상환	연리 2.5%
중소기합경	중소기업	중소기업진흥공단	2년 거치 3년 상환	연리 2.4%

[※] 재해복구(주택, 비닐하우스) 융자금 지원시 풍수해보험·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(상환 기간까지 유지)

▼ 지원절차





7 - 1 재해 농가·어가·임가 경영자금 지원

▶ 근거법령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63조, 「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」, 「축산법」제3조. 「농축산 경영지금 운용 규정」
- 「수산업법」 제86조. 「영어자금 운용요령」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」

▶ 근거법령

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등에 의한 재해피해 농·어·임가



▼ 지원조건 및 금액

소관부처	지출대상	상환조건			
고근구시	시호네이	상환기간	이율		
농림축산 식품부	(농업경영자금) 10백만원 이내 (축산경영자금) 10백만원 이내 (재해대책경영자금)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	1년간 (1년 연장 가능) * 다만,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 가는 3년 연장가능	연 3.0%		
해양수산부	자담분(재해대책본부 심의 • 확정)+피해복구비 의 20% 이내, 영어지금 소요액의 15% 이내 (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자)	1년 (1회 연장 가능)	연 3.0%		
산림청	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융자 부담률 이외 재해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	2년 거치 3년 상환	연 3.0%		

▼ 지원조건 및 금액

지원 신청 (피해농·어·임가)

자금지원 요청 (시군구 → 금융기관 농협·수협 등) 지원액 결정

대출 신청 (금융기관 농협 수협 등)

7-2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▶ 근거법령
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1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- 「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」

▼ 지원대상

•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*를 입은 중소기업 *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한함

▼ 지원내용

대출기간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※ 신용대출의 경우, 최대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)

•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

• 대출금리 : 연 2.5% 고정금리

※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특별보증(90% 보증, 수수료 0.5%)

▼ 지원절차



피해확인 (시군구)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(시군구 → 피해자) 대출 신청 (피해자 → 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)

※ 피해기업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희망시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



7-3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▶ 근거법령
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1조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
- 「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」

▼ 지원대상

•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*를 입은 소상공인 *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한함

▶ 융자조건

•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• 대출하도 : 7천만워

• 대출금리 : 연 2.5% 고정금리

※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, 수수료 0.5%)

-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수수료 0.1%

▼ 지원절차



※ 순수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

③ 도시가스⑨ 지역난방요금 감면

▶ 근거법령

-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(산업부), 천연가스공급규정(한국가스 공사 내부규정)
- 열공급규정(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)

▼ 대상·범위

도시가스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
- ▷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주택 1.680위
- ▷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.400원, 반파·침수 6.200원

지역난방요금 감면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기계실(열사용시설)의 멸실·파손·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
-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는 전일까지 해당일수에 대하여 기본요금 전액 감면

▼ 지원절차



①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
▶ 근거법령

• 「보훈기금법」 제5조.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제7조

▼ 대상·범위

•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

피해구분	세목 등	재해위로금 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				
	사망(실종)	사망 또는 실종	500					
인명	부상	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	30					
피해		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(실종)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						
	전 파	기둥 · 벽체 ·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기능한 경우						
주택 피해	반파	기둥 · 벽체 ·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					
πIoll	침수	지 수 지를 검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						
	※ 본채가 0	I'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빈집,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	백은 제외					
기타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(재난등급* 1~80등급)	50					
재산 피해	소규모	피해금액이 3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(재난등급 81~100등급)	20					
공동이용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(재난등급 1~80등급)	500					
시설피해	소규모	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(재난등급 81~90등급)	250					

※ 보훈처장(지청장)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(1개월 연장 가능)

※ 인명·주택 및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인명·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

▼ 지원절차



① 상하수도요금 감면 ②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▶ 근거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8조, 「하수도법」 제65조, 지자체 상하수도 조례
-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,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(국토부 예규)

▼ 대상·범위

상하수도요금 감면

-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자
-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원, 전액면제 등 시·군·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 ※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

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-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 ※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되나 원스톱으로 지원(재난 발생일로 2년이내)
-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**지적측량시 수수료 50% 감면**

▼ 지원절차



❸ 농기계수리 지원

▼ 지원근거・기준

• 없음(민간자율 지원)

▶ 처리기관

- 주관·처리기관: 농기계회사, 시·군·구 농업부서
- 협조기관: 농림축산식품부, 국민안전처, 시·군·구 재난부서
- (농림축산식품부)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
- (시·군·구 재난부서) 피해신고 시 안내,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·홍보

▼ 지원대상

•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사람

▼ 처리시기

- 즉시 시행
- ※ 사전 농기계회사·관내수리업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 가능

▼ 처리방법

	처리절차		비고
	정보 공유 농식품부	정보공유 협조요청 는 농기기	계호사
÷	l해정보 공유 농업부서	정보공유 협조요청	- 사전 지원 · 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 가능
	지원·홍보		
	피해주민		

Ⅴ.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

▶ 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6조
- 「풍수해보험법」 제7조

▼ 대상·범위

- 지원대상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 보험가입자
- 대상재해 : 태풍, 호우, 홍수, 해일, 강풍, 풍랑, 대설, 지진
- **지원규모**: 총 보험료의 55~92% 지원
- ※ 일반 55~92%, 차상위계층 76~92%, 기초생활수급자 86~92%
- 참여보험사 : 동부화재, 현대해상, 삼성화재, KB손보, NH농협손보

▶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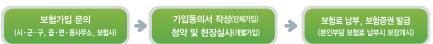
단체가입(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)

- 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가입창구 문의 및 가입동의서 제출

개별가입(주택 및 온실 소유자)

- 풍수해보험 5개 참여보험사에 문의 및 가입신청
- ※ 문의전화(02-2100-5103~7) / 5103(동부화재), 5104(현대해상), 5105(삼성화재), 5106(KB손보), 5107(NH농혐손보)

▶ 가입절차



▼ 지급절차



Ⅵ.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

▶ 근거법령

•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19조

▼ 지원 대상·금액

• 대상재해 : 태풍, 호우, 우박 등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 등

• 지원대상: 보험목적물(농작물 46. 가축 16. 양식수산물) 가입자

• 지원금액: 총 보험료의 50% 지원(국고 보조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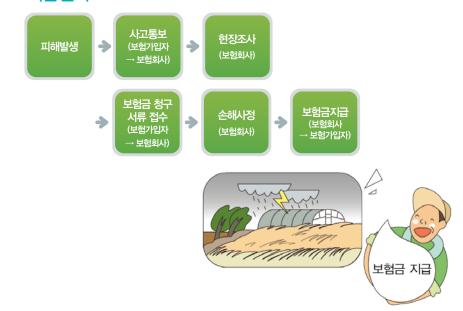
• 지원주체: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및 시·도, 시·군·구

▶ 신청방법

•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소재지 관할 농협(농작물·가축보험), 수협(양식수산물보험), LIG 컨소시엄(가축보험)에 보험가입 청약

※ 가입문의 전화: 농협 1644-8900, LIG 02-6900-3427, 수협 02-2240-2999

▶ 지급절차



Ⅷ.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

▶ 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2
- 「재해구호법」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



▼ 지원대상

•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※피해자 가족, 목격자, 수습복구활동 참여자 등 재난 간접피해자 포함

▼ 지원내용

-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·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(PTSD) 진행을 예방
- ※ 정신·신경 의학적 치료분야는 보건·의료분야로 인계

▼ 지원 및 신청방법

- (지원) 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대상자 발생 시 조기 상담활동 전개
- (신청) 인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, 방문 상담신청

▼ 지원절차



※ 재난심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

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

제근감디외국시년엔디 근탁시							
연번	센 터 명	연 락 처	주 소	비고			
1	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2-2181-3105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				
2	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1-801-407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				
3	대구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3-550-7117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				
4	인천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2-810-1334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				
5	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2-210-9521	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				
6	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1-230-1636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				
7	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3-255-9597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				
8	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3-262-7114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				
9	대전 · 세종 · 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2-220-0144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 · 세종 · 충남지사				
10	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3-280-5838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				
11	광주 · 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2-523-0545	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 광주 · 전남지사				
12	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3-250-9835	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				
13	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5-278-2725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				
14	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4-758-3502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				

[※]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(044-204-5819) 및 시·도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

Ⅷ. 기타 지원 사항 (초등돌봄교실 운영)

▶ 근거 법령

- 초중등교육과정 제2013-7호(교육부 고시)
- 「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」(17개 시·도 교육청)

▼ 지원개요

• 재난과 관련한 초등학교 휴업 중에도 학교 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초등돌봄교 실을 정상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봐주는 서비스 제공

▶ 지원대상 및 내용

- 오후 돌봄 맞벌이. 저소득층.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1~2학년 학생(방과후~17시까지)
- **저녁 돌봄** 오후 돌봄 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(17시~22시)
-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3~4학년 맞벌이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

▶ 비용부담

•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무상, 그 외 학생은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급·간식비 개인 자부담

▼ 주요 돌봄 활동

- (단체활동) 다양한 예체능,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
- (개인활동) 숙제, 일기쓰기, 독서, 기타 활동 등

▶ 신청방법

• 아이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문의 신청

(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)

▶ 근거 법령

- 「병역법」 제61조.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9조
- 「병역법」 제49조. 「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」 제35조

▼ 지원대상

-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중 징병검사, 재징병검사, 현역병(사회복무요원 포함) 입영(소집)일자가 결정된 경우로서 의무 이행기일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
- ※ 자원봉사자 등 재난수습 지원인력도 가능
-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
- ※ 국방부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 가능

▶ 지원내용

- 60일 범위 내에서 징병검사, 재징병검사, 현역병(사회복무요원 포함) 입영(소집)일자 연기
- ※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, 지방병무청장이 60일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의무 이행기일 연기 가능
- 당해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면제(병무청)
- 당해연도의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(국방부)

▶ 신청절차



Ⅸ.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Q1 피해신고 기간은?

- IA.
-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.
- 장기여행·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※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Q2)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?

- IA.
- 시설피해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에 제출
-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.
- ※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(www.safekorea.go.kr)

Q3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?

- IA.
- 반파 미만의 소규모 주택피해, 어선,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
- 상가 및 상품, 가재도구, 농기계, 자동차 동산
- 무허가시설,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. 수산증·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이며.
- 다만, 주택은 건축 허가·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임. ※ 무허가·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

24 정부지원 종합인내서 국민인전체 25

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

▶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

지원항목	지원기준				주관 / 처리기관	협조기관	근거법
건강보험료 경감 특별	재난등급(소상공인은 피해금액)에 따라 건강보험료 30~50% 경감 (3개월) * 인적ㆍ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				국민건강 보험공단	보건복지부, 국민안전처	국민건강보험법 제 75조 보험료 경감고시 (복지부) 제7조
국민연금 납부예외	최장 12개	월 연금는	남부 예외		국민연금공단 (지사)	보건복지부, 국민안전처	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통신요금 감면 특별	1~90등급 1회선 1개 최대 12,5 *통신사 성 수 있음	월 00원 (기	· 본원칙)		SKT KT LGU+	미래부, 국민안전처	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6조, 특별재난 지역 지원기준(통신 사업자연합회)
지방세 감면	감면, 면제, 납기유예 재산세 등 일괄감면 및 납기연장 (최장 6개월) 대체취득시 취·등록세 면제			행정자치부/ 시·군·구 세무담당부서	시・군・구 재난부서	지방세기본법 제26 조,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4조, 제92조 등	
국세 납세	징수유예, 납기연장, 체납처분유예 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등 - 최장 9개월 연장				국세청 / 지방국 세청 · 세무서	국민안전처	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, 법인세법 제58조 및 소득세법 제58조
전기료 감면	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감면 - (멸실)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- (침수) 1개월분의 50% 면제				한국전력공사	시・군・구 재난부서	특별재난지역 지원기 준(한국전력공사 내 부규정)
복구자금 융자	파해시설 동경지, 동작물 등 어선, 수산 생물 등 산림작물, 시설 등 주택 소상공인	취급 은행	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17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	이물 연리 1.5% 연리 1.5% 연리 1.5% 연리 2.5% 연리 2.5%	국토·농림· 해수부, 산림· 중기청 / 시·군·구 주택·농업· 어업·산림· 경제부서 / 지방중소 기업청 / 금융기관	시·군·구 재난부서	농어업재해대책법, 재난구호 및 재난복 구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, 중소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제61조, 재 해중소기업 지원지침 (중기청 고시)

지원항목	지원기준	주관 / 처리기관	협조기관	근거법
도시가스 요금 감면	주택피해 유형별(전파, 반파, 침수) 1개월분 정액 감면 지원 -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 -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, 반파·침수 6,200원	일반도시가스 사업자 / 한국가스공사	산업자원부, 국민안전처	특별재난지역 도시가 스요금 경감지침 (산업부) 천연가스공급규정 (가스공사 내부규정)
지역난방 요금 감면	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- (기계실 멸실·파손·침수로 사용 불가한 경우 - (열공급 중지일~재개전일 기본요 금 전액 감면 지원	한국지역 난방공사	산업자원부, 국민안전처	열공급규정 제26조 (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)
상하수도 요금 감면	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- (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*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 다름	환경부 / 시・군・구 재난부서	시·군·구 재난부서	수도법 제38조, 하수 도법 제65조, 지자체 상수도 급수 하수도 사용조례
지적측량 수수료 감면	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 - (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	한국국토 정보공사	국 <u>토교</u> 통부, 국민안전처	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(국토 부 예규)
보훈대상 위로금 지원	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ㆍ주택전파:500만원 재산 1,000만원 이상 피해 시 50만 원 등 * 원스톱으로 지원하거나 피해사실확 인서 제출 시 지원	국가보훈처 / 지방보훈관서	국민안전처	보훈기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,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(보훈처 훈령)
농기계 수리지원	농기계 수리 필요한 경우 유·무상 수리 * 민간자율지원	농기계회사 / 시・군・구 농업부서	시·군·구 재난부서	관계법령 없음 (민간 자율 지원)

※ 🟥 : 특별재난지역에만 지원

